

각국의 안전관계법령집

— 독일편 —

박 창 복

(위험관리정보센터 차장)

1. 독일의 법체계

가. 법의 특징

(1) 연방법과 주법

독일연방공화국은 각각 헌법을 갖는 구 서독 11주(베를린 포함) 및 구 동독 5주를 합한 16주로 된 연방공화국으로 연방과 주에 입법권이 있다. 연방법과 주법과의 관계는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GG, 이하 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Verfassung)이라는 명칭이 아닌 기본법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독일 재통일 후에 정식으로 독일 헌법을 제정하기까지 의 잠정적인 기본법이라는 제정자의 의도에 의한 것이나 실제로는 독일 재통일은 기본법에 기초하여 동독 모든 주의 독일 연방공화국으로의 흡수 형태로 이루어져 기본법은 현재에도 독일 전체의 헌법으로 존재한다.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는 기본법인 제7장, 연방과 주와의 법률 집행 및 행정에 관해서는 기본법 제8장 및 제8a장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 제정에 관해서는 연방이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한편, 그 집행이나 행정면에서는 주의 담당부분이 큰 것이 특징이다.

(2) 구 동독의 법령·규칙의 효력

독일의 통합은 동독의 모든 주가 서독에 흡수되

는 형태이므로 동독지역에도 원칙적으로 구 서독의 법률이 적용된다. 그러나 즉시 서독의 법률에 통일되면, 사회·경제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법률의 통일 후에도 구 동독의 법령·규칙이 5주에서 현재도 유효하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령·규칙이 유효한가는 구 동·서독일 정부간에 교환된 “통일조약”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나. 건축에 관한 인·허가 사항

건축 신청은 시·읍·면의 건축준비국(Bauaufsichtsamt)에 제출되고, 형식상으로는 소방서나 영업감독국(Gewerbeaufsichtamt)에 서류를 회부하여, 의견을 청취한 뒤 인가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실제는 설계담당자가 건축기준국, 소방서, 영업감독국에 개별로 접촉해야 한다.

인가 취득에는 소규모 주거 외에는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건축 인가를 취득하여 착공한 후에도 구체단계에서 구조검사, 마감이 종료한 단계에서 완공검사가 있고, 그 양쪽을 통과하여 처음으로 건축물의 사용이 허가된다. 완공검사는 신청서류대로 건설되었는가를 체크하는 것 외에도 건축물을 실지로 검사하여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검사관이 생각하면 건축 인가 조건이 아닌 조치에 대해서도 추가로 하여야 한다. 한편, 구조검사는 건축기준국이 하지 않고, 자격을 가진 시험구조가가 행한다(위탁비용은 시공자 부담).

2. 방화·방폭 규제의 개요

가. 방화·방폭 규제의 틀

(1) 규제 개요

안전 및 방재관련 사항의 입법권 중 노재관련 사항은 연방이 갖지만, 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연방 건축법(Bundesbaugesetz) 아래 각 주가 주 건축령(Landesbauordnung)을 제정한다. 실무에서는 거의 주 건축령을 참조한다(건축사 자격도 주 단위로 취득).

주 건축령은 건축법과 소방법에 해당하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 건축령은 개개의 주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연방이 작성한 모범 건축령법(Muster Bauordnung)을 모형으로 각 주가 주 실정에 맞춰 약간 수정한 것으로 방화관련 규정 자체는 별 차이가 없다.

주 건축령에서는 특수한 ‘건축물의 추가 규제 또는 규제 완화’가 가능한 것이 으뜸으로 규정되어 있고(즉, 놀트라인 = 웨스트페レン주의 경우 50조 : 별도 자료), 특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나 행정상 취급지침이 공표되어 있는 것도 있다.(예를 들면, 놀트라인 = 웨스트페렌주의 경우, 차고, 상업시설, 집회소, 병원, 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특별 조례가 있고, 공장 건설에 관한 지침이 공표되어 있음.)

(2) 구 동독의 취급

구 동독지역에서는 이전에는 구 서독지역과 다른 건축관련 법규가 적용되었지만, 1990년 7월 동독지역건축령법(Bauordnungsrecht für die Länder Brandenburg, Mecklenburg-B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uringen)에 의해, 구 서독의 모든 주와 거의 같은 건축령이 적용되게 되었다. 그 결과, 금후 신축 또는 증축되는 건축물에 관해서는 구 서독의 규제가 행해지게 된다(별도자료).

(3) 법률 이외의 규제

모든 기업은 업종별로 조직된 노재보험조합

(Berufsgenossenschaft: 직업조합)에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 조합은 노재 발생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기업에 대해 검사하는 외, 각종 안전규칙(노재방지규정 및 그 밖의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면 만일의 경우 노재보험에 지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2만마르크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다. 노재보험조합의 안전규칙 중에는 가반식 소화기의 설치 기준 등 방화관련의 것도 포함되어 있다.

(4) 민간기준과의 관계

민간기준에는 DIN 외에 미국의 NFPA, FM이나 영국의 LPC에 해당하는 VdS, 그외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연구기관인 TUV(독일기술검사협회)나 VDE(독일전기기사협회) 등의 업계 단체도 안전방재관련 기준을 작성하고 있다.

나. 안전방재에 관한 법령 규칙

(1) 놀트라인 = 웨스트페렌주 건축령

(2) 함부르크시 건축령(함부르크는 동업자 조합의 자유도시로서 주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현지에서 듣기로는 건축물의 방화관련 규정은 모든 주 건축령에 기재되어 있다. 단, 주 건축령의 방화에 관한 규정은 건물 내의 인간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것이나, 소방대나 구조대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상구까지의 거리, 방화구획, 내화시간 등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소화설비에 관한 규정은 건축령 자체에는 거의 없다. 건축령에는 어떤 주·도시에서도 특수한 건축물(차고, 상업시설, 가연물저장시설, 집회장, 고층건축물, 병원, 학교 등)에는 특별한 요청을 추가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을 근거로 조례나 지침을 제정해 소화설비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별도자료).

공통의 모범 건축령법을 기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놀트라인 = 웨스트페렌주와 함부르크시에서 건축령의 규정내용은 거의 같다(피난로의 폭이

다소 다른 정도). 단, 놀트라인 = 웨스트페렌주가 특수한 건축물에 대해 특별한 조례를 다수 제정(차고, 상업시설, 집회장, 병원, 학교, 고층건축물, 공장 등)해서 요구기준을 상당히 명확히 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함부르크시는 차고만으로(그 외에 고층건축물에 관한 조문이 1조만 건축령 자체에 들어 있음), 요구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차이가 있다.

(3) 노동 장소에 관한 정령

방화관련 규정으로서는 피난로 및 소화설비의 규정이 있다(별도자료 참조).

다. 방화·방폭관련 법령의 특징

방화·방폭관련 법령을 검토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법령의 특징에 유의해야 한다.

(1) 사고 개념이 우리와 다른 부분이 많아 단순한 비교는 어렵다.

예를 들면, 건축령에서는 비상계단을 복수로 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피난로’는 직역하면 ‘구출로’라는 독일어로 표기되어 소방대의 진입구에서 사다리차를 통해 ‘구출’될 것 같은 루트라도 상관없다는 사고가 배경에 있기 때문에 비상계단을 복수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화설비에 관한 규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천정’ 또는 ‘지붕’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말하는 천정에서 위층의 바닥까지, 천정에서 지붕의 표면까지의 구조를 일체로 ‘천정’, ‘지붕’이라 부르고 있어, 조문 중의 ‘천정’, ‘지붕’을 그대로 천정이나 지붕과 동일시할 수 없다.

(2) 현장 담당관의 재량 범위가 넓어, 일괄적으로 규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건축령에서는 특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가 요청이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취지를 정하고 있지만, 조례나 지침의 형태로 그 내용이 충분히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건물 내의 인간이) 안전한 장소까지 피난하기에 충분한 피난로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 피난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놀트라인 = 웨

스트페렌주 건축령17조)식의 막연한 규정이 많고, 담당관이 개개의 안건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재량권을 적용하는 부분이 많다.

(3) 규정 방법이 분야에 따라 같지 않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동일한 법령·규칙 중에 구체적으로 수치를 들어 세세한 기준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와 ‘충분한 성능을 가진 것’ 식의 기능 요건만의 규정에 머무는 부분이 혼재하여 어느 수준의 법령·규칙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다.

(4) 법령 검색이 곤란하다.

방화관련 규정은 연방 단위의 법률이나 정령이 아니라 주로 주의 정령으로 규제되며, 통상 육법 전서에 해당하는 법령집에는 기재되지 않는 것이 많아 법령 검색 그 자체가 어렵다. 독일의 법령은 영문으로 출판된 것은 없고, 사용되는 독어도 통상 사전에는 기재되지 않는 특수한 용어가 많아 법령의 검색은 어렵다.

(5) 노동관련 법규에서 규제되는 부분이 많다.

소화설비 등 노동관련 법규에서 규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것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하게 규제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3. 법령·규칙의 운용상황과 진출시의 유의점

가. 법률상의 요구사항과 실무상의 운용

(1) 실무의 운용상황

건축령은 주마다 다르지만 건축령 자체는 각 주가 연방의 모범 건축령법(Muster Bauordnung)을 기초로 작성하며, 구성은 각 주 공통으로 조문 수도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주 건축령은 실무상 앞에 서술한 것처럼 하나의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취급, 현장의 담당관의 해석에 따라 운용이 크게 달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에 따라 또, 도시와 농촌에 따라 실무상 염격함이 다를 뿐 아니라 같은 도시에서도 담당관마다 운용이 다르다고 한다.

그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안전성을 담당관에게 어떻게 해서 설득하는가가 건축기준국과의 교섭의 중심이 된다. 담당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내에 기연물이 없고, 이용자는 특정 소수로 비상 구의 위치 등을 숙지하고 있으며, 법률상 특별히 요구하지 않은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등, 그 건축물 고유의 사정을 설명하는 경우 외에 방화컨설턴트를 고용하는 일도 있다. 방화컨설턴트는 소방서의 OB나 시험연구기관 출신이 많고, 방화전문가로서 제3자 입장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연구기관에 위탁해서 실험하는 일도 있다. 담당관을 설득하기 위해 어느 만큼의 일을 하는가는 실제로는 비용의 관계에서 결정한다.

(2) 민간기준 등의 이용상황

① 독일규격 DIN(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DIN은 건축령을 위시하여 많은 정령에서 준거해야 할 규격으로서, 건축물의 상세 설계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DIN이 규정하는 대상은 시험·검사방법이나 세세한 사양 등이 많지만, 공장의 내화등급 산정방법과 같이 건축물에 요구되는 내화시간을 직접 좌우하는 규정도 있다.

② 재물보험협회 VdS(Verband der Schversicherer e.V.)

VdS는 독일에서 영업하는 손해보험회사 193사에 의해 조직된 기관으로, 콜론에 본부를 둔 업계단체이다. VdS는 보험증권의 특약조항을 포함한 약관의 검토, 보험요율의 가이드라인 작성, 보험사고에 관한 조사 및 자료의 편찬, 손해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나 자동소화설비 등의 소화설비에 관한 규격 산정 및 설치된 소화설비의 보수·점검의 청부를 행하고 있다.

VdS를은 각 보험회사에서 VdS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의 보험인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소화설비를 도입할 경우에는 VdS를에 따르지 않으면 이용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으

므로 국내에 설치된 자동소화설비는 거의 VdS의 규격에 의한 것으로 동시에 VdS가 점검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소화설비에 관해서는 DIN 규정은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단, 독일에서는 자동소화설비가 그다지 보급되어 있지 않다(VdS가 관리하는 스프링클러는 1990년 12월 현재 약 9,000개 정도 밖에 없다. 별도자료).

나. 방화훈련 등

화재시 피난방법이나 소화기의 취급법 등의 훈련은 건축령 아래에 제정된 상업시설 조례나 공장건축에 관한 지침에서 년1회 행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외에 소방서나 노재보험조합에서도 요청되고 있다.

다. 감독관청의 검사

완공검사 후에 건축기준국의 검사는 거의 없지만, 소방서에 의한 검사가 년1회 정도 있는 외에 노동장소의 안전상태를 체크한다는 취지에서 영업감독국이나 노재보험조합의 검사도 있고, 피난로에 화물이 놓여 있는지, 소화기는 바르게 관리·점검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다. 어느 쪽도 노재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체크하려 오지만, 보통은 노재보험쪽이 빈번히 검사하려 오고 검사 내용도 엄격하다고 한다.

라. 진출상 유의점

방화에 관한 법령상의 규제에서는 세세한 사항은 그다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설계도 작성 후 현장 담당관과의 교섭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현지에서 장기간 영업하여 관할관청과의 교섭의 노하우를 가진 설계사무소, 건설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 : 본 내용 중의 원문 참조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협회 위험관리정보센터(T : 780-440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